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국제 기술협력 지원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을 증원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국외업체 협력 및 유도무기 국외조달사업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7급 2명)을 증원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방위사업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을 직급 상향하며(4.5급 1명, 5급 2명),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6명(5급 1명, 6급 4명, 8급 1명)을 직급 상향(4.5급 1명, 5급 4명, 7급 1명)하는 한편, 통합소요기획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선행연구과의 명칭을 획득전략지원과로 변경하며 직제 순서를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령 제 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의 “방위사업정책과·방위사업분석과·계약제도발전과·표준기획과 및 선행연구과”를 “방위사업정책과·계약제도발전과·획득전략지원과·방위사업분석과 및 표준기획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제7호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기술을 활용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책 및 제도 발전

8. 성능개선 등 획득-운영유지 연계 정책 및 제도 발전

제8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13호와 제14호를 삭제하며, 제21호와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방위사업 관련 사업제안요청에 대한 제안서 평가 업무의 지원

22. 방위사업 관련 사업제안요청에 대한 제안서 평가 관련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11호와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으로 하고 “선행연구과장”을 “획득전략지원과장”으로 하며,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 관련 위원회에 관한 업무

- 10.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검증에 관한 업무
- 11.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전개념연구 수행에 관한 지원
- 12. 국방연구개발사업 차기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한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제도 발전

제23조 제1항의 “별표 1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사무관 2명)은”을 “별표 1의2의 정원 중 5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2명)은”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에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추가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별표 3의2”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404”를 “405”로 하고, 일반직 계 “403”를 “404”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9”를 “30”으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

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34”를 “135”로,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4”를 “113”으로 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3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3의2”를 “별표 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은 2027년 4월 30일까지,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공업사무관 1명으로 보고,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1명으로 보고, 공업사무관 1명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공업주사 1명으로 본다.

별표 2의2의 공업사무관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공업주사 1명으로 보고,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별표 3의2의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사무관 1명으로 보고, 행정사무관 1명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1명으로 보고,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1명으로 보고, 공업주사보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공업서기 1명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위사업정책국에 <u>방위사업정책과·방위사업분석과·계약제도발전과·표준기획과 및 선행연구과</u> 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 방위사업정책과·계약제도발전과·방위사업기획과·방위사업분석과 및 표준기획과를 두되, -----
③ 방위사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신기술을 활용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책 및 제도 발전
	8. 성능개선 등 획득-운영유지 연계 정책 및 제도 발전
④ <u>방위사업분석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계약제도발전과장- -----
1. <u>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u>	1. 전시·평시 국내·외 조달기획 및 계획 수립
2. <u>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평가의 지표·기준 및 기법 등 제도의 연구·발전</u>	2. 국내·외 조달사업의 집행 지시 및 예산 관리
3. <u>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u>	3. 국내·외 사업집행실적 분석·점검

에 관한 대외 협력 및 자료 수집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4.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요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구서 작성 단계의 검토·분석	에 따른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
5.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전	원회의 운영
까지의 과정에 대한 예산단계	5.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등 국
의 검토·분석	내외 조달원의 관리
6.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중	6. 국외 조달원 신용 조사 및 신용
인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도 평가
7.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완	7.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군용규격
료사업에 대한 집행성과의 검	물자 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
토·분석	8. 방위사업 관련 계약 제도의 수
8.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평가	립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단계 관련 분석·평가에 대한 지원	9. 방위사업 관련 계약에 관한 법
9.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	령의 입안·해석에 관한 업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의	10. 상업구매 집행 절차 및 기준의
수립 및 제도 발전	정립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 관련	
위원회에 관한 업무	
14.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검증에 관한 업무	
15. 무기체계 분야의 시스템, 소프	
트웨어의 획득(「방위사업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획득	

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절차에	
관한 정책·제도의 발전 업무	
16. 무기체계의 통합 및 상호운용	
성, 주파수, 암호장비, 정보보	
호에 관한 업무	
17. 선진 획득기법의 활용 정책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업무	
18. 무기체계의 획득에 관한 정보	
화기술 활용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	
19. 소관 사무와 관련한 기술개발	
관리 및 대외협력 업무	
20. 무기체계와 연계하여 일괄 확	
보되어야 하는 시설사업과 관	
련된 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및 제도 개선	
⑤ 계약제도발전과장은 다음 사항	⑤ 방위사업기획과장- -----
을 분장한다.	-----
1. 전시·평시 국내·외 조달기획	1. 선행연구 계획의 수립·시행
및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2. 국내·외 조달사업의 집행 지	2. 선행연구 조사·분석의 조정·
시 및 예산 관리	통제 및 관리
3. 국내·외 사업집행실적 분석·점검	3. 선행연구 결과보고서 작성·보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고 및 통보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4.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분석에
따른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회의 운영	5.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비용

5.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등 국내외 조달원의 관리	분석의 기준 및 기법 등 제도의 연구·발전
6. 국외 조달원 신용 조사 및 신용도 평가	6.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유지 관리
7.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군용규격 물자 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	7. 무기체계의 개발·생산 및 운영유지에 관한 사업의 목표치로 설정한 비용의 검토·분석에 관한 업무 지원
8. 방위사업 관련 계약 제도의 수립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8.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비용·일정·성과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9. 방위사업 관련 계약에 관한 법령의 입안·해석에 관한 업무	9.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 관련 위원회에 관한 업무
10. 상업구매 집행 절차 및 기준의 정립	10.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검증에 관한 업무
11. 방위사업 관련 사업제안요청에 대한 제안서 평가 업무의 지원	11.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전개념연구 수행에 관한 지원
12. 방위사업 관련 사업제안요청에 대한 제안서 평가 관련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12. 국방연구개발사업 차기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한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제도 발전
⑥ 표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방위사업분석과장- ----- ---
1. 국방분야 표준에 관한 국내외 정보·자료의 조사·분석	1.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2. 국방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	2.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평가의 지표·기준 및 기법
3. 국방 표준화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국방분야 규격 및 목록의 표준화에 관한 정책 기획 및 계획의 수립	등 제도의 연구·발전
5. 표준화 대상 군수품의 품목 지정·해제 및 각군 군수품의 목록자료 일치화	3.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대외 협력 및 자료 수집
6. 민·군규격표준화사업	4.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단계의 검토·분석
7. 군수품목록정보에 대한 국제교류 정책의 수립·시행	5.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전까지의 과정에 대한 예산단계의 검토·분석
8. 국방 표준화 심의위원회의 운영	6.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중인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9. 무기체계 부품단종 및 국외 위조부품에 관한 정책 업무	7.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성과의 검토·분석
	8.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평가 단계 관련 분석·평가에 대한 지원
	9.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무기체계 분야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획득("「방위사업법」 제3조제5호에 따른 획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절차에

	관한 정책·제도의 발전 업무 16. 무기체계의 통합 및 상호운용성, 주파수, 암호장비,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17. 선진 획득기법의 활용 정책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업무 18. 무기체계의 획득에 관한 정보화 기술 활용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 19. 소관 사무와 관련한 기술개발 관리 및 대외협력 업무 20. 무기체계와 연계하여 일괄 확보되어야 하는 시설사업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및 제도 개선 21. 방위사업 관련 사업제안요청에 대한 제안서 평가 업무의 지원 22. 방위사업 관련 사업제안요청에 대한 제안서 평가 관련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⑦ <u>선행연구과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행연구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2. 선행연구 조사·분석의 조정·통제 및 관리 3. 선행연구 결과보고서 작성·보	⑦ 표준기획과장----- ----- 1. 국방분야 표준에 관한 국내외 정보·자료의 조사·분석 2. 국방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 3. 국방 표준화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고 및 통보 4.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5.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비용 분석의 기준 및 기법 등 제도의 연구·발전 6.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유지 관리 7. 무기체계의 개발·생산 및 운영유지에 관한 사업의 목표치로 설정한 비용의 검토·분석에 관한 업무 지원 8.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비용·일정·성과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①, ② (생략) ③ 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u>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 <신 설> ④ 기술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국방분야 규격 및 목록의 표준화에 관한 정책 기획 및 계획의 수립 5. 표준화 대상 군수품의 품목 지정·해제 및 각군 군수품의 목록자료 일치화 6. 민·군규격표준화사업 7. 군수품목록정보에 대한 국제교류 정책의 수립·시행 8. 국방 표준화 심의위원회의 운영 9. 무기체계 부품단종 및 국외 위조부품에 관한 정책 업무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1. (현행과 같음) 12. 국방과학기술의 국제공동연구 개발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업무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 -----
---	--

③ 방위사업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
표 3의2와 같다.

----- .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
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
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
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_____
_____ 별
표 4와 같다.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04</u>	<u>405</u>	+1
·	·	·	
·	·	·	
일반직 계	<u>403</u>	<u>404</u>	+1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29</u>	<u>30</u>	+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34</u>	<u>135</u>	+1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관세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 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 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14</u>	<u>113</u>	-1
·	·	·	
·	·	·	

[별표 2의2]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총계	366
일반직 계	366
고위공무원단	3
무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7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8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1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9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9
행정서기·세무서기·관세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해양수산서기·항공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1

행정서기보 · 세무서기보 · 관세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 업서기보 · 농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항공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
사무운영서기	1
사무운영서기보	3
수석전문관 · 행정전문관 · 통계전문관 · 공업전문관 · 농 업전문관 · 해양수산전문관 · 보건전문관 · 항공전문관 · 시설전문관 · 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29

[별표 3의2]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4조제2항 관련)

총계	345
일반직 계	345
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4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8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 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5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 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9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관세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해양수산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 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4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주사보 · 통계주사보 · 사 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 신주사보	55
행정서기 · 세무서기 · 관세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 농업서기 · 해양수산서기 · 항공서기 · 시설서기 · 전산 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9
행정서기보 · 세무서기보 · 관세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 업서기보 · 농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항공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

사무운영서기	2
사무운영서기보	3
수석전문관 · 행정전문관 · 통계전문관 · 공업전문관 · 농업전문관 · 해양수산전문관 · 보건전문관 · 항공전문관 · 시설전문관 · 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28